

- (1)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이를 실시하는 기관과 교육시간이 부족함.
 - (2)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평생교육시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이러한 기관이 3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일교육시간을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함.
 - (3) 교육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지침의 통보(영 제14조제3항 신설)
- (1) 다양한 통일교육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2)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3)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통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7월 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천정배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18971호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변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변호사법시행령”을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대법원장·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각각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법무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정관변

경을 인가한 때에는 법무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대한 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법 제58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제13조의4(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 ①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무법인(유한)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잔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잔여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의5(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6(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 ①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기재한 후 제출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의7(준용규정)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법”을 “「형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조제1호나목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가목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경찰법”을 “「경찰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동호라목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마목중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며, 제13조제4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18조제4항제1호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며, 제21조제1호 및 제2호중 “법원조직법”을 각각 “「법원조직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변호사법시행령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